

2018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시흥시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산검사의견서	1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2
III. 결산검사결과	3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3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3
나. 예산 세입·세출 결산	9
다. 재무제표 결산	9
라. 기금 결산	10
마. 성과보고서 결산	10
2. 그 외 주요 결산	11
가. 채권 및 채무	11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12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13
IV.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4
1. 총 평	15
2. 세입분야	16
3. 세출분야	18
4. 재무제표분야	21
5. 기금분야	21
6. 성과보고분야	23

2018년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시흥시장

2018년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19일 ~ 5월 8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복 희 (시흥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성 금 순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조 기 철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김 태 성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박 진 현 (세 무 사)

I . 결산검사의견서

시흥시장 귀하

2019년 5월 8일

우리 위원 5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의회로부터 시흥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19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시흥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시흥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시흥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기금,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이	복	희
위	원	성	금
위	원	조	기
위	원	김	태
위	원	박	진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주안 사항으로는 시흥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관계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의 확인을 통한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결과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입	762,819,650	885,619,431	957,613,817	1,070,152,702	1,247,081,271
	세출	620,138,987	648,779,514	695,799,947	802,437,642	924,357,706
	결산상잉여금	142,680,663	236,839,917	261,813,870	267,715,060	322,723,565
기타 특별회계	세입	74,412,715	84,814,069	97,474,090	108,483,320	106,384,121
	세출	18,386,716	17,940,185	24,465,043	31,819,826	40,197,178
	결산상잉여금	56,025,999	66,873,884	73,009,046	76,663,494	66,186,943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614,333,892	938,243,124	1,141,066,292	1,060,275,393	979,493,058
	세출	308,039,955	383,291,070	418,934,944	267,232,993	366,915,609
	결산상 잉여금	306,293,936	554,952,055	722,131,348	793,042,400	612,577,449
총 계	세입(수입)	1,451,566,257	1,908,676,625	2,196,154,199	2,238,911,415	2,332,958,450
	세출(지출)	946,565,658	1,050,010,769	1,139,199,934	1,101,490,461	1,331,470,493
	결산상 잉여금	505,000,599	858,665,856	1,056,954,265	1,137,420,954	1,001,487,957

○ 시흥시의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2,332,958백만원, 총 세출은 1,331,470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001,487백만원임.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연도에 2,967,482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7%p 낮음. 잉여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8,269,299,266	2,023,977,307	6,245,321,959	1,029,645,260	857,210,414	(172,434,846)	
2017년	7,621,553,303	1,973,046,365	5,648,506,938	912,383,527	758,432,349	(153,951,178)	
증감	647,745,963	50,930,942	596,815,021	117,261,733	98,778,065	(18,483,668)	

○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96,815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0.6%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18,484백만원(-12%) 증가함.

※ 재정운영결과 :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 결과로 "(-)는 투입비용대비 산출수익이 많다" 는 긍정적인 결과임

나. 예산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2,282,428,764	2,332,958,450	1,331,470,493	1,001,487,957
일 반 회 계	1,205,832,706	1,247,081,271	924,357,706	322,723,56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81,270,626	979,493,058	366,915,609	612,577,449
기 타 특 별 회 계	95,325,433	106,384,121	40,197,178	66,186,943

회 계 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1,465,116	50,719,822	214,863,423	6,840,112	697,599,484
일 반 회 계	30,805,358	13,981,936	160,059,554	4,090,502	113,786,21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0	36,139,175	44,087,317	2,748,011	529,602,946
기 타 특 별 회 계	659,758	598,711	10,716,552	1,599	54,210,322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32,95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282,429백만원보다 50,529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57%인 1,331,470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01,487백만원임.

- 이 중 이월금 297,048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6,840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697,599백만원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205,832,706	1,328,334,230	1,247,081,271	3,810,412	77,442,547
전 년 도	1,016,682,357	1,145,486,663	1,070,152,702	3,469,355	71,864,606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247,081백만원은 예산액의 103.4%로서 41,24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총176,92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 31,675백만원 증가,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 등)이 84,795백만원 증가, 예치금 회수 60,458백만원 증가 등 고른 증가 추세에 기인함.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41,248백만원 초과 수납

-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9,147백만원 초과 수납
지방세 예산과목 중 주민세 1,077백만원, 재산세 3,408백만원, 자동차세 413백만원, 담배소비세 1,054백만원, 지방소득세 4,19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목은 999백만원 적게 수납되었음.
-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401백만원 초과 수납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은 4,78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9,615백만원 초과 수납.
- 기타 보조금 등 17,700백만원의 초과 수납.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총 3,810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3%)

- 지방세 징수결정액 388,566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2,361백만원(0.6%)은
 - 사유별로 시효소멸 422백만원, 행방불명 6백만원, 무재산 1,933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5,614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1,449백만원(1.4%)은
 - 사유별로 시효소멸 665백만원, 무재산 768백만원, 기타 16백만원으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총 77,44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5.8%)

- 지방세 징수결정액 388,566백만원 중 미수납액 43,366백만원(11.2%)
 - 사유별로 무재산 4,635백만원, 행방불명 702백만원, 납세태만 1,639백만원, 소송 계류 310백만원, 기타 36,080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5,614백만원 중 미수납액 34,077백만원(32.3%)
 - 사유별로 무재산 172백만원, 행방불명 0.6백만원, 납세태만 33,276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14백만원, 소송계류 186백만원, 기타 429백만원으로 구분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3)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95,325,433	115,444,870	106,384,121	589,966	8,470,784
전년도	100,840,523	118,501,911	108,483,320	207,085	9,811,506

○ 세입예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에서 수납액 106,384백만원은 예산액의 111.6%로서 11,05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11,059백만원 초과 수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백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91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76백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1백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7,92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0.2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백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3백만원이 예산보다 적게 수납됨.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총 590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5%)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총 590백만원으로 사유별로 시효소멸 353백만원, 무재산 237백만원으로 구분됨.
- 교통사업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총8,319백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7.3%)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9,854백만원 중 8,319백만원(27.8%)이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됨.
-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084백만원 중 152백만원(14.0%)이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됨.
-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해당없음.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 전용	수입대체 경비
당해연도	1,030,792,554	175,040,152				
전년도	845,792,064	170,890,293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1,205,832,706	924,357,706	204,846,848	4,090,502	72,537,650
1,016,682,356	802,437,642	175,040,152	3,621,327	35,583,236

○ 세출결산 개요

- 예산현액 1,205,833백만원 중 집행잔액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04,847백만원과 불용액 72,537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 보조금 정산잔액 : 6,063백만원
 -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 10,959백만원
 - ◆ 지출잔액 : 48,273백만원
 - ◆ 예비비 : 7,242백만원임
-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7%인 이월액 204,847백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명시이월액 30,805백만원, 대용량버스(2층버스) 도입 지원 등 사고이월액 13,982백만원,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이월액 160,060백만원임.

(5)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 전용	수입대체 경비
당해연도	89,678,612	5,646,821				
전년도	93,970,785	6,869,738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95,325,433	40,197,178	11,975,022	1,599	43,151,634
100,840,523	31,819,826	5,646,820	27	63,373,850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95,325백만원 중 집행잔액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1,975백만원과 불용액 43,151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 보조금 정산잔액 : 0.1백만원
-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 792 백만원
- ◆ 지출잔액 : 1,267 백만원
- ◆ 예비비 : 41,092 백만원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포함)

○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2.6%인 이월액 11,975백만원은 명시이월액 659백만원, 사고이월액 599백만원과 계속비이월액 10,717백만원임.

다. 재무제표 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8,269,299,266	7,621,553,302	647,745,964	8.5%
Ⅰ. 유동자산	2,806,440,040	2,722,363,522	84,076,518	3.1%
Ⅱ. 투자자산	6,870,970	6,448,198	422,772	6.6%
Ⅲ. 일반유형자산	459,628,039	386,429,291	73,198,748	18.9%
Ⅳ. 주민편의시설	1,678,106,242	1,254,517,535	423,588,707	33.8%
Ⅴ. 사회기반시설	3,294,881,020	3,228,241,648	66,639,372	2.1%
Ⅵ 기타비유동자산	23,372,955	23,553,108	(180,153)	-0.8%
부 채	2,023,977,307	1,973,046,365	50,930,942	2.6%
Ⅰ. 유동부채	2,012,257,361	1,957,571,703	54,685,658	2.8%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
Ⅲ. 기타비유동부채	11,719,946	15,474,662	(3,754,716)	-24.3%
순자산	6,245,321,959	5,648,506,938	596,815,021	10.5%
Ⅰ. 고정순자산	5,454,948,771	4,892,282,020	562,666,751	12%
Ⅱ. 특정순자산	25,159,272	20,402,580	4,756,692	23%
Ⅲ. 일반순자산	765,213,916	735,822,338	29,391,578	3.9%

- 당해연도 말 시흥시의 자산은 8,269,299백만원으로 전연도의 7,621,553백만원 보다 647,746백만원(8.5%)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분양용지의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5,462,85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63,67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등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012,257백만원(99.42%)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1,720백만원(0.58%)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0.58%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에 비해 50,931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유동부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분양선수금 증가 등으로 54,68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소송관련 우발부채의 감소 등으로 3,754백만원 감소하였음.

라.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수납	당기지출	기말잔액
계	61,830,975	46,245,787	1,356,930	106,719,832
식품진흥기금	915,033	151,064	181,399	884,698
옥외광고정비기금	2,753,548	451,191	465,270	2,739,469
재난관리기금	13,614,384	2,787,180	694,819	15,706,74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6,125	1,812,676	15,441	2,173,360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4,171,885	692,551	0	44,864,436
공영개발회전기금	0	40,351,126	0	40,351,126

-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106,72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889백만원 증가하였음.

마. 성과보고서 결산

- 시흥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시흥시는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별로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 10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0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시흥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 206개 중 171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초과달성 36개, 달성 135개), 35개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83%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전략목표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A/B)
16	109	206	171	35	83

※ 초과달성:130%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2. 그 외 주요 결산

가. 채권 및 채무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0,178,346	665,954	319,522	10,524,777
일반회계	9,339,058	53,800	150,000	9,242,858
특별회계	839,288	612,154	169,522	1,281,919
공기업특별회계	968	0	0	968
기타특별회계	838,320	612,154	169,522	1,280,951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25백만원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	0	0	0	0	0
기금	0	0	0	0	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임.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2,904,760,242	422,850,585	8,591,207	3,319,019,620	
행정 재산	계	2,281,875,322	308,809,388	5,537,500	2,585,147,211
	공용재산	630,796,232	122,087,433	2,189,244	750,694,420
	공공용재산	1,512,890,047	186,721,956	3,348,256	1,696,263,747
	기업용재산	94,332,946	0	0	94,332,946
	보존용재산	43,856,098	0	0	43,856,098
일반재산	622,884,920	114,041,196	3,053,707	733,872,409	

○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19,020백만원임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734	162	55	1,841
금 액	17,833,520	139,719	417	17,972,822

○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973백만원임

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합 계	3,720,601	20,722,149	22,157,929	2,284,822
보증금	2,107,238	154,969	2,066,869	195,338
보관금	973,385	20,398,547	19,887,862	1,484,070
기 타	639,977	168,634	203,198	605,413

【보관내역】

- 보증금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등 195백만원
- 보관금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1,484백만원
- 잡종금 : 팩스민원수수료, 가로수원상회복예치금등 605백만원

IV. 시정 및 개선 권고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 2018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기금분야, 재무제표, 성과보고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세수 예측과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산출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올바른 결산 관리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집행잔액 원인 분석을 통한 불용액 감소 노력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환류까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조직개편이나 추경편성 등의 변경 사항이 성과 계획 및 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시책, 제도시행 시 시민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결산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회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세입분야

□ 세외수입 체납액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세외수입 중 임시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5년 평균 비율은 47.3%이며, 18년은 평균치보다 적은 3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 도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2014	임시적세외수입	70,648,594,016	29,744,294,005	42.1%
2015	임시적세외수입	106,907,141,189	68,580,983,150	64.2%
2016	임시적세외수입	52,270,123,054	15,539,088,962	29.7%
2017	임시적세외수입	64,049,149,959	29,922,120,339	46.7%
2018	임시적세외수입	58,234,316,568	22,927,098,949	39.4%
합 계		352,109,324,786	166,713,585,405	47.3%

-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업무는 당해연도 발생분은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과 당해연도가 지난 지난년도분은 징수와 세외수입기동팀에서 관리하는 방식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부과담당자는 고지서 발송 후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 납부 독촉, 나아가 재산의 압류까지의 체납처분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기동팀에서는 지난년도 체납관리와 더불어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체납관리에 대한 필수이행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 주기적인 공지 등의 원활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적시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될 가능성이 큼니다.
- 제도상 정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지만, 부과부서의 담당자로서 필수이행사항인 징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고, 필히 인수인계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세외수입징수팀은 지속적인 체납관리 협조 요청과 부과부서의 체납처분절차 업무의 지원 및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감사 지적사항이면서도, 교부금 등의 수취 나아가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적극적이며 유기적인 체납징수 및 조세채권 확보로 공평과세를 구현하시길 권고합니다.

□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 및 올바른 결산서 반영

- 세입의 결손 및 환급 처분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불납결손액 자료 및 환급액의 목록을 받고 표본을 추출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업무처리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부속서류에 표시된 사유별 집계 금액과 실제 관리에 사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 집계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손	결산서			지방세 프로그램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 부족
당해연도	11,567,070	951,540	35,258,570		47,777,180	
지난년도	410,162,320	5,540,580	1,897,811,620	418,524,630	1,894,985,770	4,120

-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추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고, 대량의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았으며, 환급 현황의 경우 전년도 8,345천원에서 292,374천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환급은 대분류 외 소분류의 사유가 다양한데, 대분류를 간과하고 소분류를 지정하여 자료를 추출함에 따른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집행주체에 대한 회계책임 확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과 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보고 수단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산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며, 지방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정과 및 징수과는 세입의 부과 및 징수가 주된 업무이나, 결산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신뢰 행정을 구현하시길 권합니다.

3. 세출분야

□ 국·도비 보조금 관리 철저

- 사업부서는 보조금 결산과 관련 대사기능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출결산상 보조금반납액과 순세계잉여금 계산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①보조금집행현황의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 대사와 ②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분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예산부서, 회계부서와 함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시달된 보조금 금액 통보 공문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의해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금액과 보조금수령액은 일치하여야 하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집행현황			세출예산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보조금집행잔액	집행잔액중 보조금집행잔액
국도비보조금	332,590,020	286,317,434	6,840,112	6,840,112
차액	46,272,586		-	

- 가. 보조금이 내시보다 적게 교부되었으나 당초 예산(내시)금액으로 사업 집행한 경우
 - 미래농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운영
- 나. 연도 중 내시변경 및 도비 증액(교부)되었으나 예산반영에 누락된 경우
 - 미래농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 다. 내시사항이 여러 개 사업에 중복 반영된 경우
 - 행정과 규책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직접)
- 라. 사업조건 및 사업대상자의 불편사항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려워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 아동보육과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56.95%)
 - 대중교통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76.45%)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공문을 받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누락한 경우, 이는 예산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금은 존재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또한 총사업비보다 적게 시달된 경우에는 현금이 없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 총칙] 제7조(간주처리)에 최종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한 내용을 활용하여, 보조금의 시달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현액과 보조금수령액이 일치하도록 정산 및 간주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조금은 우리시의 세입계좌에 입금되면 간주처리를 통하여 세입조치하고,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시달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한 후에도 세입조치 하지 않은 상태로 세입계좌에 방치한 사례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처리 되지 않은 보조금은 세입계좌에는 입금되었으나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우리시의 세입예산에 포함된 금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집행상황 조사)의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여 예산과(정책기획관), 회계과, 세정과, 보조금 운영부서가 합동으로 매 분기마다 보조금예산현황에 대하여 대사를 하고, 또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는 증·감에 대한 정산 간주처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나타낼 수 있는 허수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장기사업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여 불용액 최소화

- 당기 세출예산중 불용액 비율이 큰 건을 살펴본 바, 이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기사업의 공사비로, 당해연도에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 경우였습니다.

단위: 천원

사업명	최초편성액		지출액	불용액	19년편성액	
월곶동도시계획도로	648,676	2017년 2회추경	304,010	344,667	보상비	460,000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1,400,000	2017년 2회 추경 2018년 본예산	10,244	1,389,756	보상비	1,250,000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260,000	2017년 2회 추경 2018년 본예산	937	259,063	보상비	200,000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366,360	2018년 본예산	11,186	355,174	보상비	338,000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보상비	2,000,000	2017년 본예산	413,482	1,586,518	보상비	300,000

- 1)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위의 공사들은 도로 등 건설공사로, 그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예산편성 초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사업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이월할 수 없어 예산잔액을 불용처리 하였고 2019년도 다시 단일연도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사의 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중장기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중장기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 과다지출 등 재정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적게 받는 경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므로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사업의 경우 예산소요 급증에도 유동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기간 지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계속비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 낭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부서의 업무중 예산·회계업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중장기 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 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예산부서의 상호 보완절차를 마련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4. 재무제표 분야

□ 시흥매화산단개발(주) 관련 미수금 회수 권고

-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164번지 일원에서 진행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설립된 시흥매화산단개발(주) 설립 전 동 사업을 위하여 시흥시가 지출한 선투입비용은 총 2,244,966천원이며(출처: 주주협약서 P.38), 시흥시가 동 선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시흥시와 민간투자자간 체결된 ‘주주협약서(2015.01.27)’ 제6조(기 투자비용의 부담)와 제35조(사업개발비 회수를 위한 양수도 계약 및 이행방식) 및 ‘사업협약서(2015.01.27)’ 제7조(기타사항)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협약서 제6조 제1항) “각 당사자” 는, “각 당사자” 가 본건 사업을 위하여 선 투자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체와 관련하여 (i)제2항의 양수도계약을 통해 회사가 그 결과물 등을 양수하도록 하고 (ii)회사로 하여금 동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양수도 대금(아래 비용 일체와 동일하여야 한다)을 해당 “각 당사자” 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각 당사자” 의 아래 비용의 회수를 위한 양수도 대금은 대출약정 체결 이후 인출된 대출금으로 집행하기로 한다. 각 호의 상세 내용은 부록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주주협약서 제35조 제1항) ‘회사 설립 전 선 투입한 사업비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설립 이후에 회사와 체결하는 양수도 계약을 통해 회수하는 것으로 하며, 그 양수도대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PF인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사업협약서 제7조 제1항) ‘시흥시가 기 투입한 비용 및 본 협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제반추진비용은 SPC 설립 후 본 사업의 사업비로 정산한다’

- 주주협약서와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SPC가 설립되고(2015.02.23.) PF대출이 실행된 2015년에 시흥시와 시흥매화산단개발(주) 간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투입비용(2,244,966천원)을 회수하였어야 하나, 결산검사일 현재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주주협약서에는 동 선투입비용(2,244,966천원)의 회수지연과 관련한 연체이자 등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기금 결산 분야

□ 기금별 지출예산의 및 결산 적정 처리

- 2018.12.31.일 현재 식품진흥기금 외 총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독립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기금운영계획 하에서 운영되며(지방기금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3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위의 법률규정과 예산편성운영기준은 별도의 독립적인 재원과 운용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개년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액 대비 지출계획현액 비교표

구분	설치 연도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기금 조성액 (A)	지출 계획 현액(B)	비율 (B/A)	기금 조성액 (A)	지출 계획 현액(B)	비율 (B/A)	기금 조성액 (A)	지출 계획 현액(B)	비율 (B/A)
식품진흥기금	2001	815	216	27	915	275	30	885	269	30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2,287	216	9	2,754	309	11	2,740	490	18
재난관리기금	2005	11,307	730	6	13,614	301	2	15,707	880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3	512	328	64	376	141	37	2,173	615	28
상수도사업회전기금	2014	43,369	0	0	44,172	0	0	44,864	0	0
공영개발회전기금	2018	0	0	0	0	0		40,351	0	0
합계		58,290	1,490		61,831	1,026		106,720	2,254	

- 미래투자재원 또는 지출재원의 마련을 위해 설정된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는 전체 기금액 대비하여 지출운용액이 각각 30%와 17%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기금원금에서 당해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일몰제도 운영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지출예산편성은 옳바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출예산편성을 확대하거나 기금규모의 축소를 권고 드립니다.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의 각 연도별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계획안은 과거의 수입지출의 추세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본원적인 기금목적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검토과정 없이 설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배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별 일몰시점까지의 예산규모 검토를 권고 드립니다.

6. 성과보고서 분야

□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개선

- 「지방재정법」 제 5조 2항 및 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 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2018회계년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개, 백만원)

성 과 목 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6	109	206	36	135	35	964,554

-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변경이 있을 시는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대조해 본 결과 2018년도 추경 및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사업 수와 지표수, 정책사업 금액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였습니다.
-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 달성이 가능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었고, 당초 성과계획서의 측정산식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예) 교육 및 컨설팅 업무(분기별 횟수/ 교육 횟수 등)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하나 점검기능인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아래 사항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가. 당해연도 예산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역을 시기별로 반영(수정)하여 관리.

나.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 및 측정산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

다. 내실 있는 자료 관리로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시스템화 하여 구축 바람.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성과보고서는 2008년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부터 시작 2009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2015년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2016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심부족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수준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과보고서의 기본방향은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임의 변경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가.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설정

나.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 간 연계성 미흡

다.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은 목표치가 100% 달성 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라. 실적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는 측정방법 설정

마. 실적치 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 명시가 부족

○ 대부분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본예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직개편이나 추경 반영에 대한 예산이 수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전 부서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 부족으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성과계획 및 보고에 대한 전담관리 부서 강화와 각 부서의 성과보고서 담당자는 행정의 경력자가 담당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각 팀장 및 팀원들의 의견들이 모여져 정책목표를 세워야 하나 대부분의 부서 정책 사업들이 정책사업이라 하기에는 미흡하고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들을 정책사업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서 정책목표를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현실행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 **성과보고서 상 측정산식 설정의 문제점**

- 일자리총괄과는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라는 단일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며, 상기 정책사업목표의 측정산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문제점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고용증대(명)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실적보고	목표	14000	15000	〈주1〉
		실적	22793	20158	
		달성률(%)	162%	134%	

〈주1〉 일자리창출에서는 성과지표로 일자리창출 인원설정과 측정산식은 목표공시제와 실적보고로 했으며 일자리 구분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인프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자리 구분에서 직접일자리 현황을 분석 해 보니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이 중점이었으며 정작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현장인 고용서비스나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고용 통계 현황은 지나치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실적 위주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회성인 아르바이트사업이나 단기성 혹은 실적위주의 일자리보다 고정적이며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각 일자리창출 현장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들의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고정유지율 등 사후 꾸준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의 경우 측정산식 즉 일자리목표 공시제에 중점을 두다보면 우리시가 만들어낸 다양한 일자리창출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측정산식 수정을 권고합니다.
- 또한 일자리총괄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일자리창출 현황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전체 일자리창출 현황자료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부서장은 매년 일자리총괄부서의 협조 안내문을 잘 숙지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을 권고합니다.